

함께하는 FTA

July 2015 vol. 38



협상 개시한 한·중미 FTA 주요 내용

파워 인터뷰: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영향평가 및 국내보완대책

한중FTA 활용, 1 3 8 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 3 8 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Korean Society of Trade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FTA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박정준 연구원을 처음 본 것은 2년 전인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개설한 '제 1기 FTA 실무전문가 과정(FLP: FTA Leadership Program)' 수업에서였다. 주임교수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조교로 수업 진행을 돋던 끊임없는 청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박 연구원은 당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2학기째로 한국에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을 때였다. 올 2월 5학기 만에 대학원을 마치고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 1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 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그의 '대한민국의 FTA와 개성공단' 발표는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의 원산지를 FTA별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잘 보여줬다. '함께하는 FT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용을 지면에 기고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FTA 이슈를 연재 중이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공부의 질적인 측면은 만족스러웠지만, 양적인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제통상을 선택했습니다." 석사 진학 전까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는데, 세계 통상 흐름에 빨리 적응한 한국의 저력을 지켜보며 FTA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올 9월부터 박 연구원은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다. "석사 때의 관심 분야인 국제통상을 심층적으로 공부할 계획이지만, 이론만으로 한계가 있을 테니 정책·산업현장과 호흡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





08

Contents

July 2015 vol. 38



COVER STORY

올해 정식서명을 마친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7월 1일(통권 38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Special Report

- 24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적불금·
폐업지원금 품목 결정

Issue Focus

- 04 한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06 한·중미 FTA 협상 개시
08 지상중계: FTA시대 원산지 리스크 관리,
이대로 좋은가?
10 FTA 사후검증 사례분석

FTA Cartoon

- 27 FTA로 한국의 시장이 더욱 넓어집니다!
안종만

Cover Story

성큼 다가온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 12 한·중 FTA 정식서명과 효과
14 한·중 FTA의 주요 의의
16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영향평가 및 국내보완대책 주요 내용
20 중국 및 아시아 통상환경 변화와 한·중 FTA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FTA Study

- 28 자유무역의 역사:
⑯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Power Interview

- 22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

- 30 메가 FTA 출다리기:
TPP와 RCEP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②한·중 지식재산권 이해 I
손보인 변호사·변리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34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⑭캠핑용품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변경사항 알아두기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 38 사후검증 성공 노하우
유영웅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Art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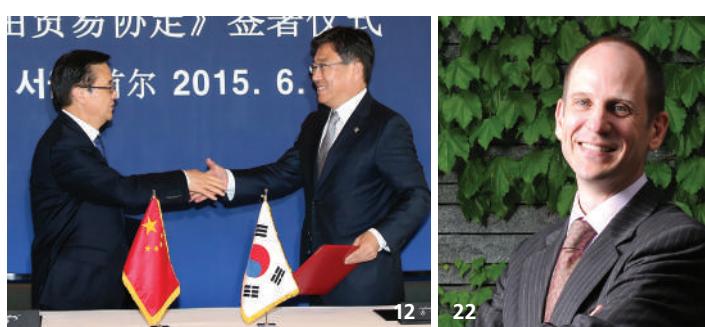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⑨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F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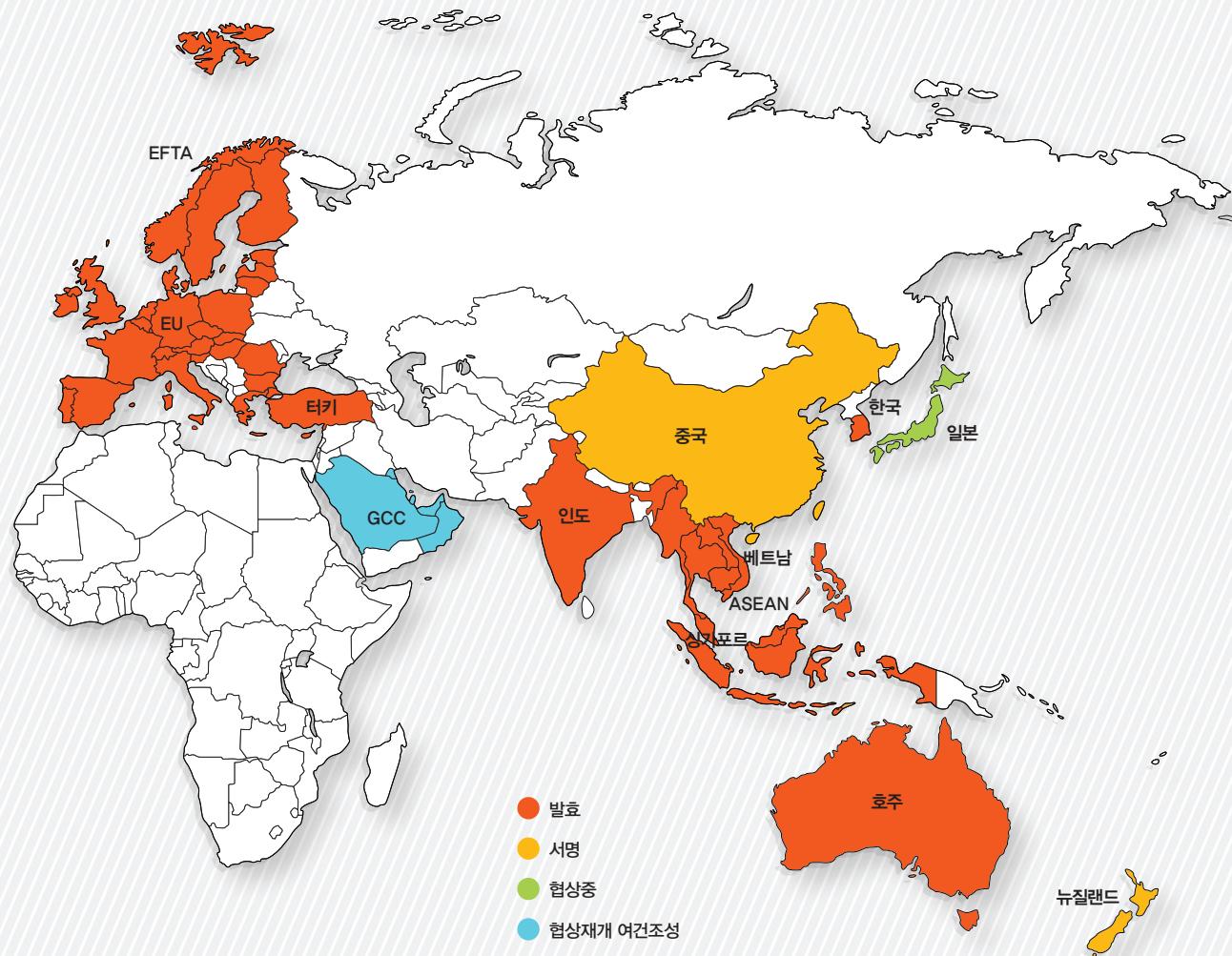
- 42 제11차 'TPP 전략포럼' 개최 등

FTA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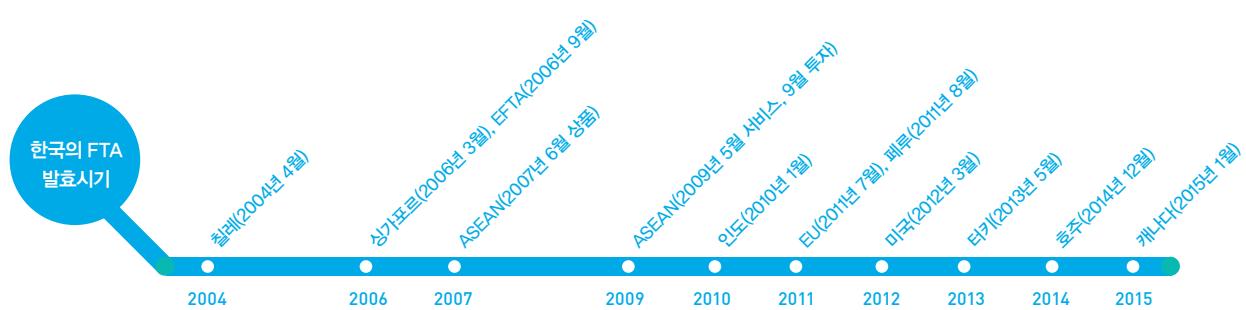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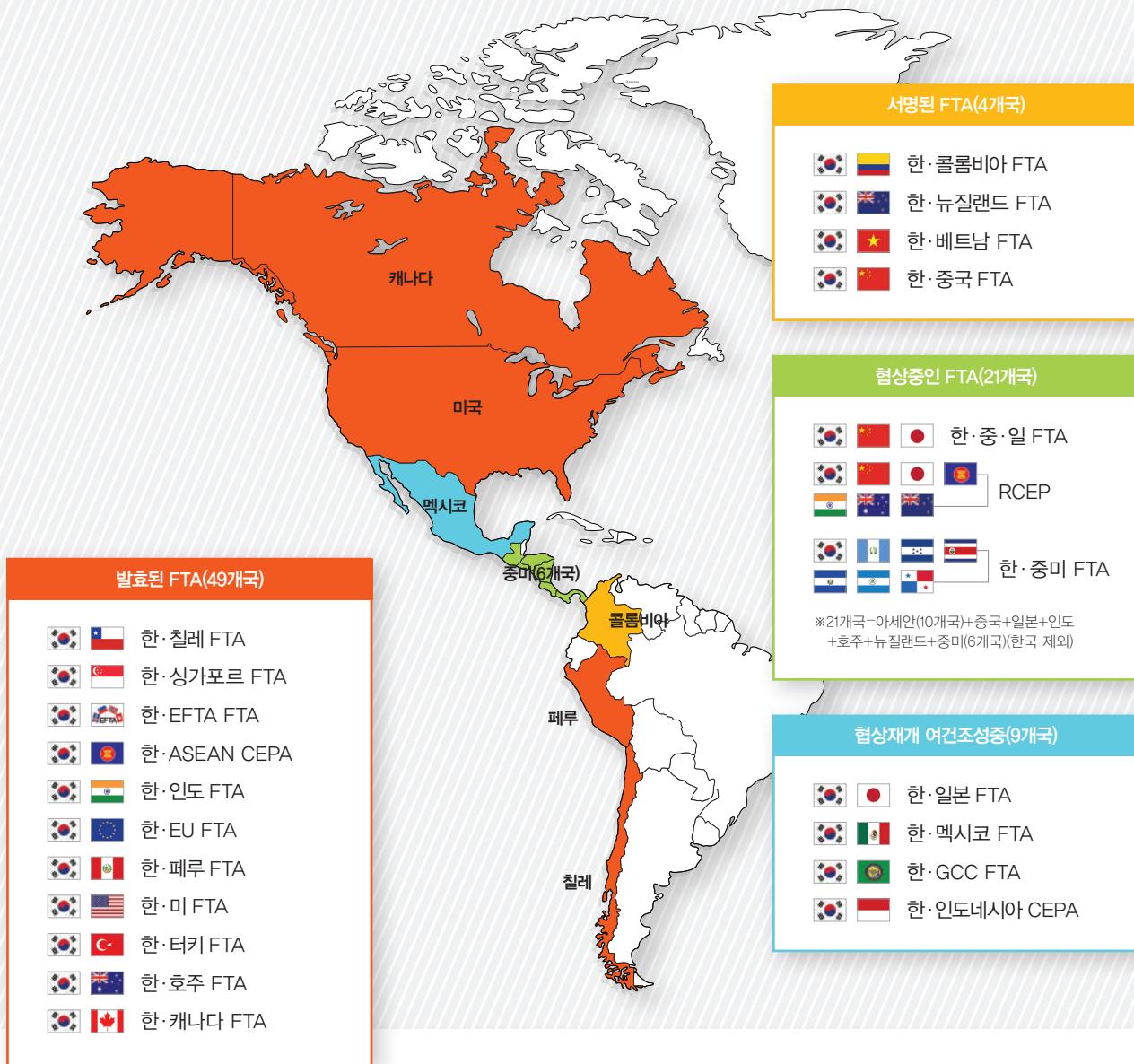


정리 우종국 기자



한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8일 미국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교역·투자 다변화 포석... 미주 지역 연안 FTA벨트로 연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8일 오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은 중남미에서 GDP 규모 5위(2,098억불), 인구 규모 3위(4,350만 명)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타결 시 중미시장 선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 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진출해 15만 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상 추진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인 교역·투자를 다변화하고 우리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EU,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과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어 미주와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전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상직 장관은 FTA 협상과 병행해 ①한·중미 간 교역, 투자 환경 개선과제 발굴, ②한·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진출 등 비즈니스 협력모델 도출, ③한국 기업들의 중미지역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교역규모는 50억 달러 수준(2014년)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

과테말라 Guatemala	
면적	108,889km ² (세계 107위)
인구	14,647,083명(세계 69위)
GDP	583억 USD(세계 75위)
1인당 GDP	3,674 USD(세계 112위)
수도	과테말라시티

엘살바도르 El Salvador	
면적	21,041km ² (세계 153위)
인구	6,125,512명(세계 109위)
GDP	251억 USD(세계 103위)
1인당 GDP	3,958USD(세계 109위)
수도	산살바도르

온두라스 Honduras	
면적	112,090km ² (세계 103위)
인구	8,598,611명(세계 93위)
GDP	194억 USD(세계 108위)
1인당 GDP	2,344USD(세계 131위)
수도	테구시갈파



니카라과 Nicaragua	
면적	130,370km ² (세계 98위)
인구	5,848,641명(세계 111위)
GDP	118억 USD(세계 129위)
1인당 GDP	1,904 USD(세계 138위)
수도	마나과

코스타리카 Costa Rica	
면적	51,100km ² (세계 130위)
인구	4,755,234(세계 124위)
GDP	505억 USD(세계 78위)
1인당 GDP	1만568USD(세계 65위)
수도	산호세

파나마 Panama	
면적	75,420km ² (세계 118위)
인구	3,608,431(세계 131위)
GDP	447억 USD(세계 87위)
1인당 GDP	1만1,800USD(세계 61위)
수도	파나마시티

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FTA 체결 시 상호 원원(win·win)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중미 주요국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중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기업의 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한·중미 FTA를 계기로 앞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에 있어서 교역·투자 분야는 물론, 인프라 등 그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FTA의 사범 케이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❷

한·중미 6개국 교역규모(2014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중미 교역 전체는 수출 3,764(백만 달러), 수입 1,238(백만 달러), 파나마의 경우 편의국적선에 따른 선박 수출입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교역규모는 연간 5~6억 달러 수준임.

■수입 ■수출 (단위: 백만 달러)



한·중미 FTA 협상 추진 경과

2010년 6월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 회담 시, 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2011년 5월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 코스타리카·파나마는 당초 한·코·파 3국 FTA를 제안하였으나, 경제규모 및 중미 경제통합 수준을 고려해 우리족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참여를 요청.

2011년 5월

공동연구 종료와 함께, 코스타리카·파나마족은 우리와의 FTA 협상 구조에 대한 제안서(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양허 방식, 협상 시한 등)를 전달.

2012년 10월

제1차 한·중미 FTA 추진기능성 검토회의 개최(코스타리카). 중미족은 공식 협상 개시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우리족은 다수 FTA 추진 등 여건상 협상 개시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전달. 이후 중미족은 주요 개기를 통해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 지속적으로 요청.

2015년 2월 19일

엘살바도르 경제부 면담 시 한·중미 FTA 추진 및 향후 협상 구조·수준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 교환.

2015년 2월 27일

'신(新)FTA 추진전략' 의결을 통해 상반기 중 한·중미 FTA 추진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 도출 추진.

2015년 3월 12일

통상주진위원회를 개최, '한·중미 FTA 추진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2015년 4월 1일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공청회 참석자들은 중미 지역 성장잠재력 및 지정학적 중요성, 중미 시장 선점 차원에서 한·중미 FTA의 조속한 협상 개시 필요성에 공감.

2015년 4월 7일

한·중미 FTA 추진 의결. 4월 27일 국회 보고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마련.

2015년 6월 18일

중미 6개국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글 이현주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지상중계: FTA시대 원산지 리스크 관리, 이대로 좋은가?

한·중 FTA 앞두고 사후검증 관심 고조… 입증서류 철저히 준비해야



한·중 FTA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사후검증 대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은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에서 'FTA시대 원산지 리스크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부제: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 FTA 등 향후 체결되는 FTA와 기(既)체결된 FTA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강연자들은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 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했으나, '함께하는 FTA'를 통해 그간 많이 알려진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정보를 중심으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이 행사가 처음 열린 곳은 6월 15일 서울의 대한상공회의소였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절정에 달하던 때였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A시대 원산지 리스크 관리,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일정(종료)



“미국 세관, 섬유 관련
직접검증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



강연 1

“수출신고 전에 정확한
HS코드 분류가 안 되면
사후검증 리스크 커져”



강연 2

수출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김태봉 사무관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의 김태봉 사무관은 원산지검증의 최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 또한 FTA 상대국에 대해 사후검증을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 상대국 세관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상대국의 검증요청을 업체에 사전통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세관(CBP)에서 매년 섬유류에 대한 방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직접검증을 실시했다. 섬유류는 관세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매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직접검증에 나서고 있다.

한·미 FTA 사후검증에 적발된 경우의 예를 들면, △수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자가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한·EU FTA 사후검증의 경우 한·미 FTA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고, 더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미갱신으로 인한 자격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서류에 필수문구가 기재되는 방식인데, 한·미 FTA처럼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송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아세안 FTA 사후검증의 경우, 수출자가 국내 제조자로부터 납품 받아 수출한 양변기 중 일부가 중국산으로 확인됐고, 일부 물품 제조자를 수출자로 신고하기도 했다.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신고오류항목은 정정했다. 또한 신발깔창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과 실제 선적 수량이 다른 경우도 발생했는데, 추가 수량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가 배제돼 일반세율로 통관이 이뤄졌다. 김 사무관은 특히 FTA 활용 수입 시 타국 수출자 잘못으로 수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업종/결정기준별 서류작성

안은숙 과장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산지증명서(FTA 비특혜) 발급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했고, FTA특례법은 기관발급주체를 대한상의와 세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중 79.6%를 상의가, 20.4%를 세관이 발급했다. 상의 발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세관보다 상의의 거점이 더 많고, 상의가 기업들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 실무자들을 상대하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안은숙 과장은 원산지증명서 웹발급시스템의 활용법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앞서 품목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부터 일단 하고 보자’고 하면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반드시 HS코드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 과장은 “원산지증명서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율발급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웹발급시스템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기재사항을 기존에 저장된 것을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불러오기’로 작성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작성 시 ‘발급기관 전달사항’에 신청업체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신청서류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유로 바로 반려하지 않고 문의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



FTA 사후검증 사례분석: 프랑스 세관의 착오로 인한 회신 누락의 경우

거래 상대와 원활한 소통이 효율적 검증의 기본

FTA를 통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수입품 원산지 증명 및 이에 따른 사후검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업체수 기준으로 84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수출검증은 2014년(1~7월) 194건, 수입검증은 2011년 49건에서 2014년(1~7월) 386건으로 증가했다.

FTA 원산지 검증이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이다. 검증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되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를 비롯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FTA 특혜관세의 수혜자는 수입업자이므로 원산지 검증 시 수출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수입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원산지 검증 대응자료를 잘 준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EU, 칠레, 터키, 미국, E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의 경우는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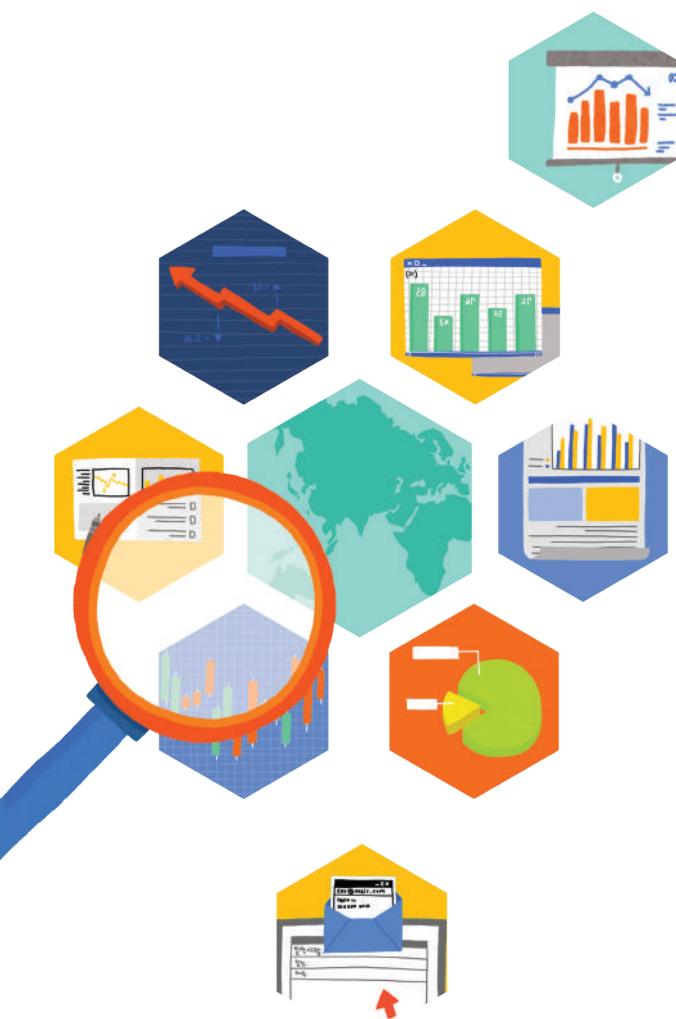
전자부품 중간소재를 프랑스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S사는 한·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지난 해 서울세관은 프랑스 관세청에 사후검증을 요청했으나, 프랑스로부터 수개월 간 응답이 없었다. 프랑스 세관이 10개월 내(2015년 4월 30일 시한)에 회신하지 않으면 S사는 특혜관세 적용 자격 박탈은 물론 5억여 원을 추징당할 상황이었다.

한·EU FTA 협정문(27조 7항): 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특혜 자격을 거부한다.

관련서류 회신 마감기한을 열흘 남겨두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S사의 요청을 받아 프랑스 관세청 및 수출업체 소재지의 지방세관 등의 해당부서 실무담당자를 수소문해 추적조사를 시행했고, 프랑스 세관의 행정 착오로 S사의 공문 회신이 누락됐음을 파악했다. 곧장 프랑스 세관은 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 내용을 회신했고, S사는 무협 브뤼셀 지부의 현장 밀착지원 덕분에 5억여 원의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협력실장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이에 따른 수입자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 또한 수출자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 수출·수입업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



COVER STORY

UPCOMING

Korea-China FTA

Korea-New Zealand FTA

Korea-Viet Nam FTA



- 한·중 FTA 정식서명과 효과
- 한·중 FTA의 주요 의의
-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영향평가 및 국내보완대책 주요 내용
- 중국 및 아시아 통상환경 변화와 한·중 FTA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6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한·중 FTA 정식서명과 효과

협상 개시 3년 만에 정식서명... 양국, 조속한 발효 추진

6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 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과 함께 가진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서명 이후 개최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FTA 민간대책위원회¹⁾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한·중 FTA 효과: ①10년간 GDP 0.96% 추가성장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①실질 GDP 0.96% 추가성장 ②소비자 후생 약 146억 달러 개선 ③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 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구분	5년	10년
실질 GDP(%)	0.30	0.96
소비자 후생(억 달러)	56.34	146.26
고용효과(천 개)	13.6	53.8
재정효과(조 원)(연평균)	-0.17	0.27

수치는 발효 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효과: ②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시장기회 창출): 스킨케어 관세철폐, ‘화장품 한류’로 활용

화장품업체 A사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영화와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새로이 모색 중이다.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이 5년 후 철폐된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대(對)중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비관세장벽 해소): 품목분류 일관화, 수출기업 통관 애로 해소

주류업체 B사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통술이 국내에서는 발효주로 인정됨에도 중국 세관에 따라 종류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통관애로를 겪었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발효주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며, 협정문에서 통관의 일관성을 규정해 중국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사례(투자유치 확대):

한국 기술과 브랜드를 활용한 중국 진출 목적의 대한 투자

- 글로벌 맥주업체인 C사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개발(R&D) 시스템과 입주 기업 네트워크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향만이 가까워 중국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글로벌→한국→중국)
- 중국 식품기업 D사는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내 마케팅을 결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산 매실 등 과일을 사용해 과일푸딩 및 젤리를 생산할 계획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 파워와 중국 내 자체 유통망을 접목해 중국으로 역수출을 추진하고 있다.(중국→한국→중국)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했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❷

1) 경제 4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

글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 '제 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적인 틀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는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30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열린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퍼레이드 모습.



한·중 FTA의 주요 의의

세계 최대 시장 선점 기회 확보... 글로벌 FTA 허브로 발돋움

정식서명 및 비준동의안 제출로 한·중 FTA의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중국과의 FTA는 무역 규모 및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부터 득실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통해 신중히 접근한 만큼 한국의 통상전략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중국과의 FTA로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중국·EU의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중국·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 칠레, 페루 뿐이다. 한·중 FTA로 GDP 기준 한국의 FTA 시장 규모(경제영토)는 73.5%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와의 교역은 63.0%로 늘어나게 된다.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중국의 GDP(10.4조 달러)는 한국(1.4조 달러)의 7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다.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기업들은 한·중 FTA를 통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소재·부품 외에도 패션·영유아용품·의료기기·생활가전 등 분야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기술력·디자인·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내 수입시장 1위를 공고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을 순위는 한국(9.7%), 일본(8.3%), 미국(7.8%), 대만(7.7%) 순이다.



국내 농수산 시장 최대한 방어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한·중 FTA는 우리의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한·중 FTA의 한국측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은 70%/40%로 한·미 FTA(98.3%/92.5%) 또는 기체결(싱가포르를 제외한 10개, 싱가포르는 아세안에 포함) FTA 평균(78.1%/89.0%)보다 낮다. 반면 중국측 농산물은 91%(이하 품목수 기준),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해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



수출·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우리기업들이 중국 수출 시 겪는 통관·시험인증·지재권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통관의 경우 48시간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600달러 이하),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을 확보했고, 시험인증의 경우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추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등을, 지재권 분야에선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

해 물품의 압류·폐기, 권리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정부 내 애로 해소 담당기관 지정,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절차 도입 등을 규정했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 DDA 양허 수준 이상의 시장을 개방했으며, 특히 중국은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유통·법률 등 유망시장을 개방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개방 불가 분야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방식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협정문(부속서 22-A)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기대

미국, EU 등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 중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둔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고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국내 U-턴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도 예상된다.



한·중 관계 심화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한·중 FTA는 경제 분야에서 '제 2의 수교'이자 양국 경제 관계의 제도적인 틀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는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국내 서비스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10만 명으로, 202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보상청구권·배타적 권리 등 한류 콘텐츠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

한·중 FTA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한·중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현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이 그간 맺은 FTA(한·EFTA FTA-267개, 한·인도 FTA-108개, 한·ASEAN FTA 및 한·페루 FTA-각 100개) 중에서 가장 폭넓은 것이다. ☺

글 우종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영향평가 및 국내보완대책 주요 내용

FTA 발효로 GDP 추가 성장... 취약산업에 집중 자금 지원

정부는 6월 4일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중 FTA(2015년 6월 1일), 한·베트남 FTA(2015년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2015년 3월 23일) 정식서명 전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 3개 FTA의 관세인하 방식은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2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내 발효 시 2016년 1월 1일 2년차 관세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6월 4일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 발효 후 10년 간 GDP 0.96% 추가 성장

국내 6개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FTA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실질 GDP, 소비자후생, 고용, 세수효과)와 산업별 영향(수출입, 생산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 간 실질 GDP가 0.96%, 한·베트남 FTA는 0.01%, 한·뉴질랜드 FTA는 0.03%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146.2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목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1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석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0.46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2.9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0.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FTA 영향평가 결과

구분	한·중 FTA	한·베 FTA	한·뉴 FTA	
실질 GDP (10년 누적)	0.96%	0.01%	0.03%	
소비자 후생 (10년 누적)	146.26억 달러	1.46억 달러	2.96억 달러	
고용 (10년 누적)	전체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53,805명 2,897명 △160명 51,067명	671명 112명 △33명 592명	952명 43명 △55명 964명
세수 증감 (10년 평균)	0.27조 원 증:169조 원 감:1,42조 원	△267.4억 원 증:175.7억 원 감:443.1억 원	△215.9억 원 증:562.4억 원 감:778.3억 원	
수출입*	전체 제조업 농림업 수산업	4.33억 달러 4.5억 달러 △0.075억 달러 △0.093억 달러	1.11억 달러 1.18억 달러 △0.011억 달러 △0.06억 달러	0.62억 달러 0.73억 달러 △0.097억 달러 △0.017억 달러
생산액*	제조업 농림업 수산업	1.39조 원 △77억 원 △104억 원	0.46조 원 △47억 원 △54억 원	0.27조 원 △237억 원 △21억 원

*수출입, 생산액의 경우 15년 평균이며 한·중 FTA는 20년 평균. △는 마이너스를 뜻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보완대책

농림업·수산업 등 취약산업 집중 지원

정부는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했다.

한·중/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이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농림업·수산업 분야 경쟁력강화 방안

구분	생산 감소(2016~2035년)	투용자 규모(2016~2025년)
농림업	2,245억 원 (한·중 FTA: 1,595억 원, 한·베트남 FTA: 664억 원)	2,259억 원
수산업	2,890억 원	3,188억 원*

*수산업은 한·뉴질랜드 FTA 생산 감소액(311억 원)까지 감안해 대책 마련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강화 방안

구분	내용	투용자 규모 (2016~20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 원), 긴급경영안정(500억 원)	3,100억 원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응자지원	3,000억 원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억 원
합계		8,035억 원

●밭농업 경쟁력 제고: 1,165억 원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2014년 56.3%→2017년 65%→2025년 85%)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 974억 원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확충(2014년 181개소→2025년 320개소)하며,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현행: 벌집꿀, 벌꿀→개정: 벌집꿀, 벌꿀, 사양꿀(가칭)), 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674억 원

맨손·나짐 어업(1인당 융자한도: 300만 원(맨손), 700만 원(나짐))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적조,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단기 운영자금(이차보전, 18%))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 1,573억 원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514억 원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 중소제조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 6,100억 원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3,100억 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3,000억 원).

● 공통애로기술 해소 지원: 기존예산 활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2015년 48.5억 원) 등)을 활용해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 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 1,470억 원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 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 한·중 TBT 종합지원: 100억 원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수입안전체계 구축: 310억 원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주,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을 물론, 흉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이번 대책은 기존에 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2014년 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2024년(9년)간 3,52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뉴질랜드 FTA 예상 피해 및 투융자 규모

생산 감소(2016~2030년)	투융자 규모(2016~2024년)
3,558억 원	3,523억 원

● 축산업 생산: 2,886억 원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은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한다.

● 축산물 유통·소비: 490억 원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 협력 추진: 147억 원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한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는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①워킹홀리데이 확대(1,800명 → 3,000명), ②일시고용입국 도입(총 200명),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 세제 및 제도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기차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한다.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을 추가 지원한다.



글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2년 한국은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012년 5월 2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모습.



중국 및 아시아 통상환경 변화와 한·중 FTA

한·중 FTA의 효과는 의심의 여지 없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騎虎難下, Riding the tiger)”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1991년 영국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고든 화이트(Gordon White)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묘사하면서 쓴 책의 이름이다.

호랑이 등에 위태롭게 올라타 있던 중국이 이제 호랑이가 됐다. 그때만 해도 주위에서 지켜보던 나라들은 이제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탈건지 말건지, 이왕 탈거라면 어떻게 타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결정했고, 무역·통상 분야 결론은 한·중 FTA였다.

한·중 FTA의 효과: ① 중국시장 선점

한·중 FTA의 효과를 간추려 보면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중국시장 선점 효과다. 한·중 FTA는 거의 모든 업종의 대중수출을 촉진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누릴 분야는 소비재다. 이유는 많다. 중국은 소비재 수입관세가 높은 데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개방하기로 약속(평균 10년)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수출 특히 소비재의 수출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비관세장벽



도 대폭 완화된다. 상품의 무관세 일시반입 및 샘플반입 허용, 신속 통관, 일부 업종의 국제인증 상호인정, 제품 표시 및 라벨링 허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관세장벽 완화 조항이다. 더 나아가 한국산 소비품의 보세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통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우리와 가까운 산동성 연해지역 지방도시들은 이미 한·중 FTA를 활용한 한국산 소비품 수입을 겨냥한 보세구 및 전자상거래 우선통관 시험조치를 시작하고 있다.

소비재는 거대 중국시장을 둔 주요 국가들 간 수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FTA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고속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고, '한류' 및 품질경쟁력 덕분에 한국산 소비품의 인기도 높다. 소비재는 우리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품이고, 고용효과도 높다. 중소기업의 대중수출 확대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중 FTA의 효과: ②한·중 간 글로벌 밸류체인 활성화

둘째는 양국 간 국제분업 즉 밸류체인(global value-chain) 활성화 효과다. 우리의 대중수출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2014년 현재 51.8%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중국의 대세계 수입 중 가공무역 비중 25.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가공무역은 사실상 밸류체인 혹은 국제 분업을 의미한다. 한·중 FTA는 가공무역에 이로운 원산지규정, 통관 원활화 조치를 담고 있어 한·중 간 밸류체인 활성화를 통한 세계시장 공동개척에 기여할 전망이다. 심지어 한·중 FTA는 역외가공(개성공단 생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한·중 간 밸류체인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한·중 간 형성된 밸류체인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과 중국 모두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투자 교류가 늘고 있는 것이다. ASEAN(아세안)의 수입에서 중국과 한국의 비중은 최근 2년 사이(2012→2014년)에 각각 3.9%(14.7→18.6%)와 0.1%(6.3→6.4%)나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각각 아세안과 FTA가 발효된 상태다. 한·중 FTA로 한·중 간 형성된 밸류체인은 더욱 쉽게 한국–중국–아세안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됐다.

한·중 FTA의 효과: ③아시아 통상환경 변화 효과적 대응

셋째는 급변하는 중국 및 아시아 통상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다. 우선 중국의 무역·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중 FTA의 조기발효 필요성 증가다. 최근 중국은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 초부터 미국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투자보장 협정(BIT)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상하이 및 후속 3개 자유무역시험구(톈진(天津), 푸젠(福建), 광동(廣東))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2015년 2월)을 통해 서비스 및 투자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한·중 FTA가 조기에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중 FTA의 효과를 잠식해 버릴 환경 변화들이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의 한·중 FTA를 통한 입지와 역할 확대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후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축이 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크고 강력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중 FTA는 우리의 일대일로 참여공간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다.

시야를 아태지역으로 넓혀보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더욱 본격화되는 가운데 '아태지역 FTA(FTAAP)' 추진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이러한 통상현안들은 사실상 한·중 FTA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한·중 FTA를 모델로 삼을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희망사항이 절대 아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공포한 한·중 FTA 설명자료를 통해 “한·중 FTA는 동북아 최초의 FTA로서 한·중·일 FTA는 물론 RCEP, 더 나가 미래 FTAAP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시범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한·중 FTA의 지역경제통합 촉진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중국 상무부, '한·중 FTA 50개 문답(2015년 6월 2일)')

2012년 우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결정하고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시장과 한·중 국제분업, 그리고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한·중 FTA가 중국시장 개척, 양국 간 분업, 통상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과 역할을 크고 높게 해주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 캐나다 대사

한·캐나다 FTA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캐나다 기업들, 한국에 대한 관심 커져



주한 캐나다대사관 1층에 전시된 무스(사슴의 일종) 인형과 함께 포즈를 취한 에릭 월시 캐나다 대사. 무스는 한국의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한·캐나다 FTA는 한국이 맺은 FTA 중 가장 최근에 발효(2015년 1월 1일)된 FTA다.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북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FTA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도 양국 산업계가 서로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올해 초 부임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로부터 한·캐나다 FTA에 대한 캐나다 측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 캐나다 대사

1994년 맥길 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5년 캐나다 외교통상부 입부
1998년 터키 주재 캐나다 대사관 이등 서기관
2001년 헝가리 주재 캐나다 대사관 일등 서기관
2003년 캐나다 외교통상부 중동/북아프리카부 조정관
2005년 스위스 제네바, 철사관 및 제네바 군축회의 차석대사
2007년 캐나다 외교통상부 동아시아국과장
2008년 캐나다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과장
2010년 독일 주재 캐나다 대사관, 공사 및 부대사
2015년 주한 캐나다 대사(현)

한국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올해 2월 초 부임했습니다. 마침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5주째를 맞아,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이 이끄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사절단의 한국 방문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는 주요 인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주력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한국 곳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관광객 입장에서 서울 주변을 돌아보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즐거운 도전 과제입니다.

올해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의 이익 균형이 잘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한·캐나다 FTA의 이행은 양국 관계에 있어 흥분되는 사건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 맺는 FTA일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주재원의 이동 등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FTA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폭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투자 관계에 있어 양국 경제규모와 성숙도에 걸맞은 성장잠재력을 일깨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캐나다 FTA의 핵심은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제조업과 수출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면서 한국과 캐나다 양쪽 모두 매출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측에선 한·캐나다 FT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FTA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캐나다 산업과 소비자는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됩니까?

물론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업계는 FTA로 인해 지역별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한국 내에서 미국, EU, 호주 등 한국의 FTA 파트너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얻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양국 간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캐나다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사업자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양국 소비자들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는 한국이 수출한 기기류, 가전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의류 등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이미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올해 2월 8~13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캐나다 무역사절단 행사에는 80개 캐나다 기업·협회에서 100명이 넘게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캐나다 FTA로 한국 산업과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캐나다 FTA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북미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FTA 발효가 충분히 이행되면, 양국무역의 99% 이상(수입액기준) 관세가 철폐됩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6.1%를 3년에 걸쳐 없애고, 자동차부품은 5년에 걸쳐 없애게 돼 한국 산업에 특별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캐나다 FTA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캐나다 내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3위국이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관세가 점차 없어지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는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이는 한국의 정유사 및 석유화학 업계의 비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한편 한국 및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산 고급 쇠고기와 돼지고기, 아이스와인 등의 캐나다산 농식품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캐나다를 대표해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해 주십시오.

한·캐나다 FTA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핵심은 양국 업계가 낮아진 관세의 이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FTA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에 새로운 협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현재 과학기술혁신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캐나다 정부가 공표한 대로 연간 100만 CAD(캐나다달러)가 캐나다 국제 혁신 프로그램(전 국제 과학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연구 및 혁신 분야가 더욱 공고히 연계됨으로써 잠재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❷

글 이현주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 등 9개 품목을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으로 결정했다.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품목 결정

FTA 민감 품목 보완 제도… 수입 증가 시 피해를 직접 지원

FTA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주력산업에서 이익을 보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산업도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품목은 수입량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된다.

지난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T센터에서 'FTA 농업법'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 선정 경과'를 보고받고, 총 9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해당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다. 또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 중에서 선정하는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으로 선정했다.

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념 및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FTA 농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FTA에 따

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다. 요건은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하고(가격 요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 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하며(총수입량 요건)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증가해야 한다(수입량 요건).

대상품목 '농업인 등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42개 품목에 대해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은 옥수수, 녹두,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11개 품목이었다. 지원센터가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수입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옥수수와 녹두의 경우 개별 FTA 체결국의 수입량은 기준수입량보다 증가했으나,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은 기준수입량보다 감소해 수입기여도가 '0'으로 분석되면서 빠졌다.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지급단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직전 5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90\%$)과 해당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90%를 지원한다. 상한액은 농업법인 5,000만 원, 농업인 3,500만 원이다.

2. FTA 폐업지원제도

개념 및 선정기준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협정의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9개 품목 중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 선정됐다. 제외된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은 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대두, 감자, 고구마는 재식 후 수익을 얻기까지 최대 7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포도, 체리, 밤은 2~6년이 걸린다. 육계(닭고기)의 자본평가액은 100마리 당 31만3,000원(2013년 기준), 건물 이용 면적은 5.79㎡, 토지이용면적은 0.01㎡으로, 투자비용이 큰 것이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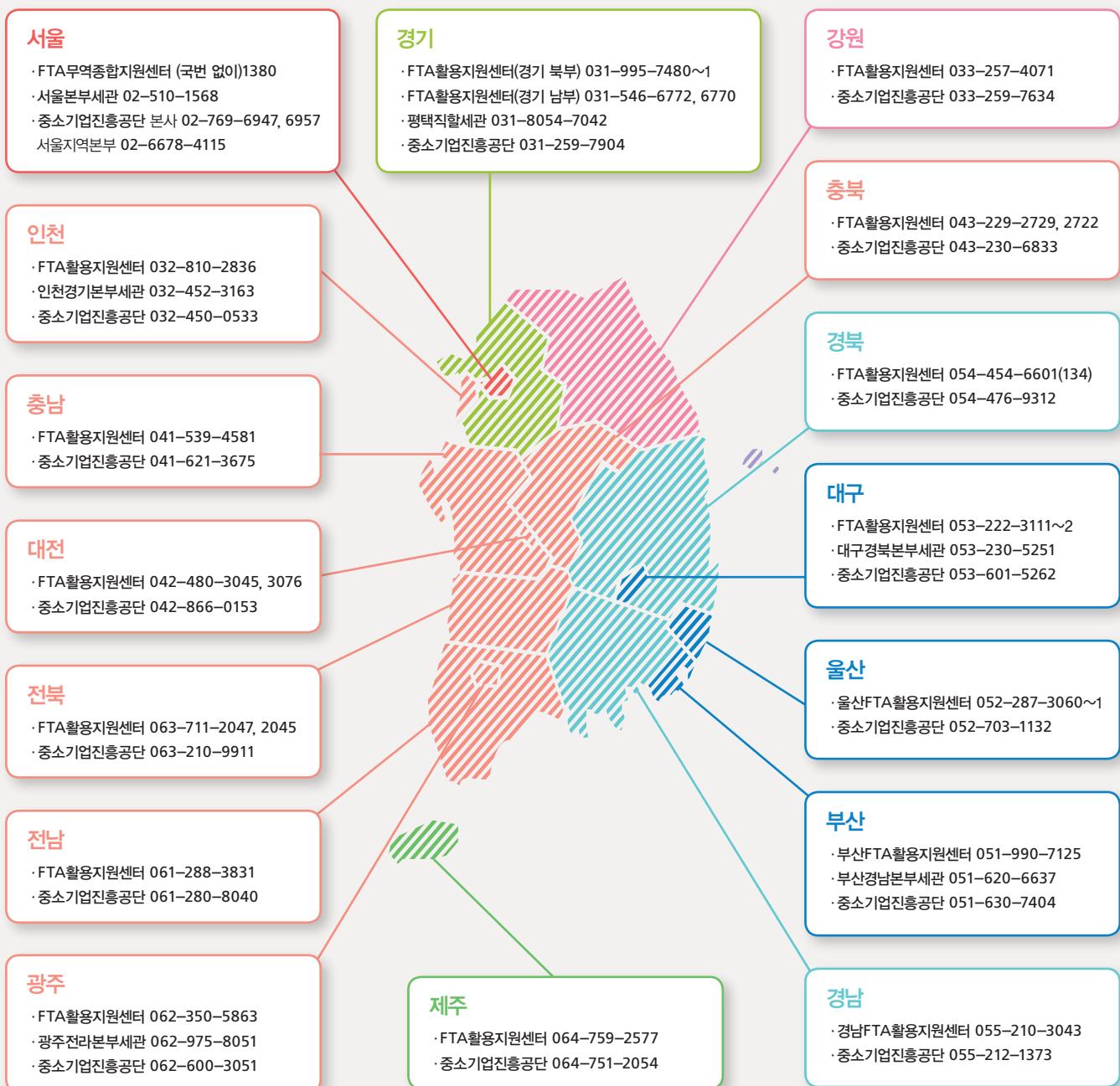
지급기준 협정일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하지만,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건축·도로개설 등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며, 한·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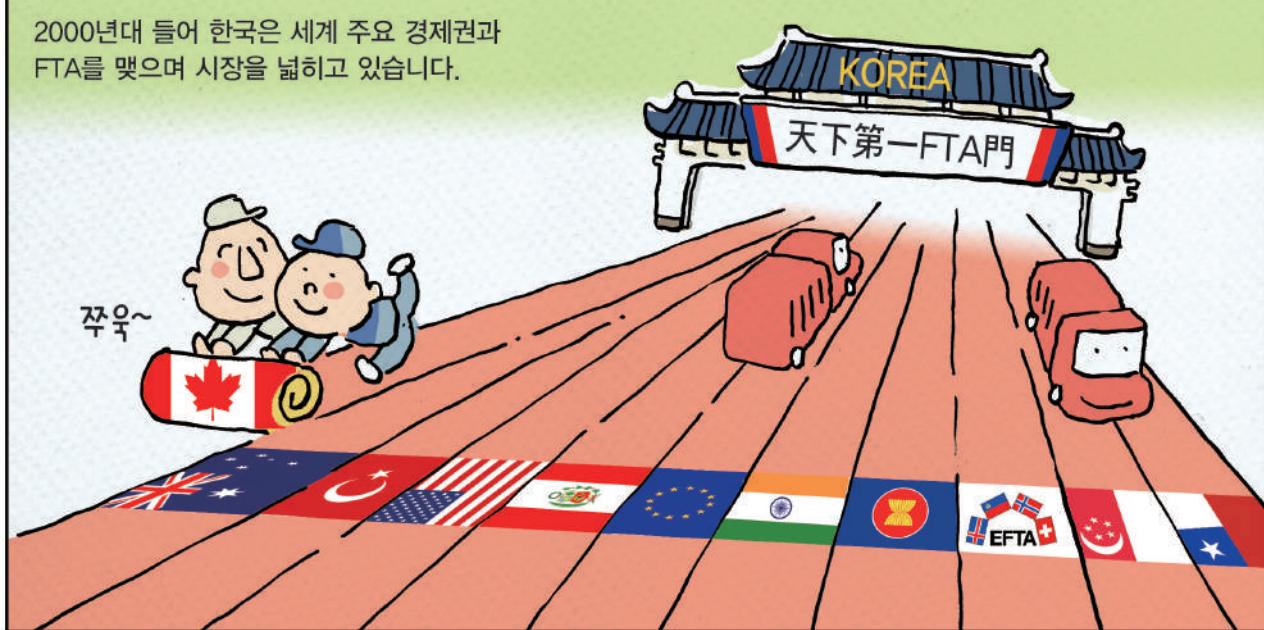


카툰 안종만

FTA로 한국의 시장이 더욱 넓어집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으며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식서명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머지않아 한국 시장을 더욱 넓혀주게 될 이들 국가와의 FTA를 환영합니다.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자유무역의 역사: ⑩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올해 협상 타결 목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FTA다. 현재 참여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2개국이다. 이들 나라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29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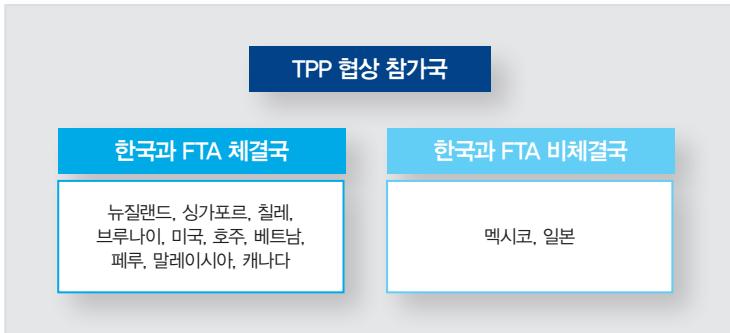
지난 2002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정상들은 멕시코의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태평양연안 3국간 경제긴밀화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 CEP)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2005년 4월에는 브루나이가 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함에 따라 정식 명칭이 한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또는 Pacific-4)으로 바뀌었다. 이 협정은 2005년 6월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같은 해 7월에는 브루나이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칠레에서 공식 발효됐다. 당시 P-4 협정은 향후 회원국 추가에 대해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3년 일본 참여로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

이후 2008년 1월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관련해 P4 회원국들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해 9월 P4 회원국들과 정식으로 전 분야 협상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11월 첫 번째 아시아 방문길에서 미국의 TPP 추진에 대한 강한 의



2002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가 시작한 'P-3 CEP' 협상은 이후 'P-4(2005년)' 'TPP(2010년)'로 명칭이 바뀌며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협정으로 발전했다. 사진은 2014년 10월 27일 호주에서 열린 TPP 협상 후 각국 통상장관들이 참여한 기자회견 모습.



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론 커크(Ron Kirk) 미무역 대표부(USTR) 대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지역경제협력 체(high-standard, broad-based regional pact)의 달성을 목표로 TPP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2008년 11월에는 호주, 베트남 및 페루가 P4 협상 참여를 선언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협상 참여 의사를 발표했다. 이로서 공식 명칭도 P4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됐다.

2010년 캐나다는 TPP 협상의 옵서버 국가가 됐고, 이후 공식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뉴질랜드는 캐나다의 농업정책과 지재권 보호정책을 이유로 캐나다의 참여를 반대했다. 멕시코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회원국들은 멕시코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9개 회원국들과 국내 협의(domestic consultation) 과정을 마치고 2012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자민당 내각 집권 후 아베노믹스(통화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의 일환으로 TPP 가입을 추진했다. TPP처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협정 참여를 통해 자국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과 공조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본의 TPP 가입과 관련해 일본의 농

은 농업 보호 수준이 문제가 됐다. 2013년 2월 미국이 일본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TPP 가입 물꼬가 트일 수 있었다. 마침내 2013년 3월 일본이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7월부터 12번째 회원국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 2013년 11월 관심표명 후 참여국과 양자협의

현재 TPP 12개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24일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TPA)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대통령이 TPA를 부여받으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TPP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만 실시할 수 있게 돼 원안대로 신속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TPA가 협상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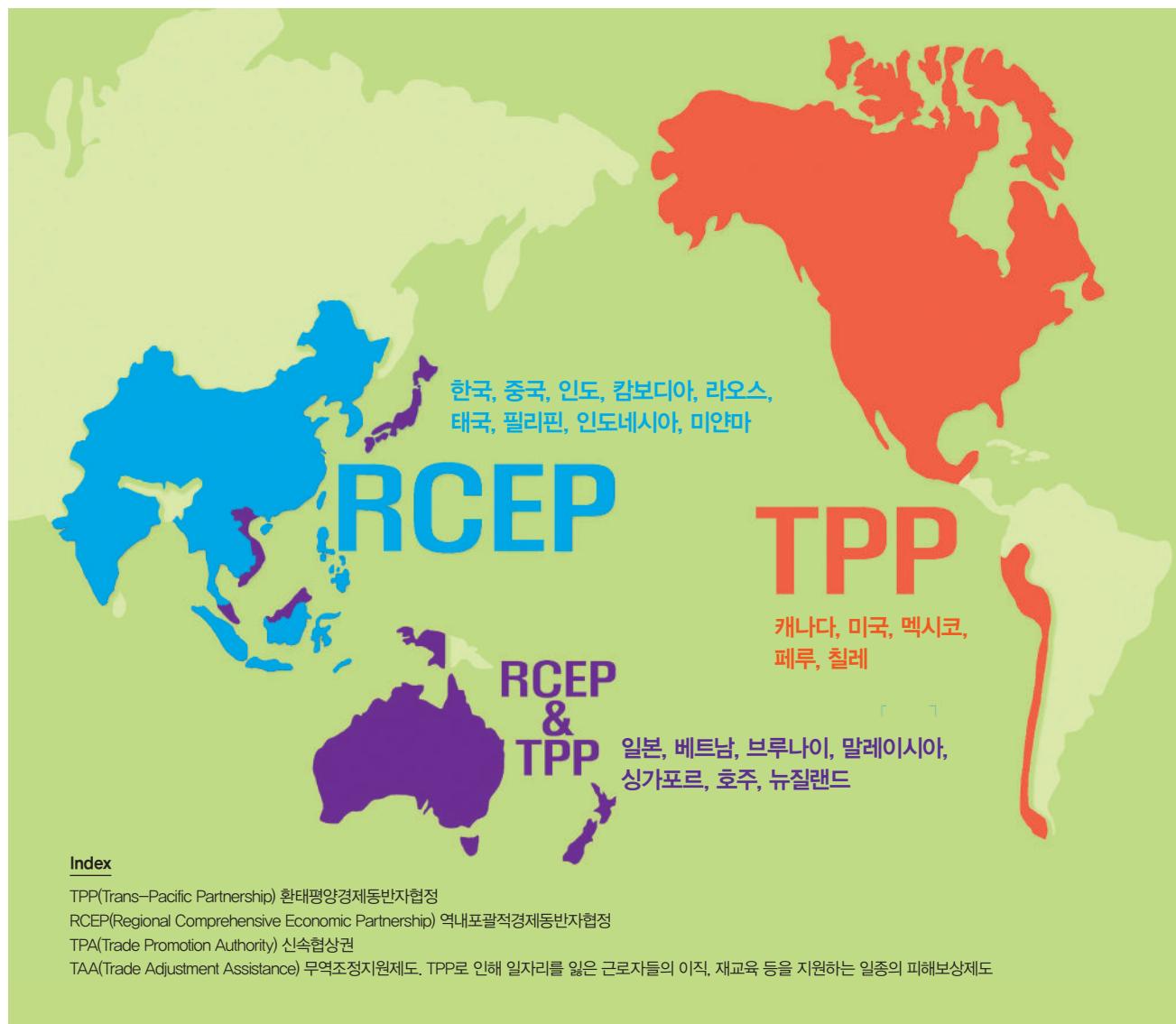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TPP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① 관심표명, ②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③ 공식 참여 선언, ④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⑤ 공식 협상 참여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 현재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것으로 TPP 합류를 위해서는 기존 TPP 협상국과의 양자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기존 협상 당사국들로부터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정부는 TPP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및 분야별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PP 참여국들은 역내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를 위해 공통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IT, 녹색성장, 신기술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한다는 원칙도 설정하고 있다. TPP가 체결될 경우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태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TPP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3,471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액 대비 33.5%를 차지 한다. 한국은 TPP를 통해 몇몇 TPP 회원국들(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 및 멕시코 등 비체결국과의 FTA를 새로 체결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메가 FTA 줄다리기: TPP와 RCEP

한국, TPP와 RCEP 모두 적극 참여… 미·중·일 사이 역학관계 이점 활용해야

WTO 체제에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4년째 기약 없는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수많은 양자간 FTA가 체결됐으며 더 나아가 메가 FTA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대표적인 미·일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관점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과 일본은 TPP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해 자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무역주도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축으로서 TPP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기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도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통화·재정·성장)' 정책에서 TPP를 통해 '세 번째 화살'을 쓸 준비를 마쳤다. 오바마 행정부는 TPA 조속처리 요청으로 의회를 압박했고 일부에서는 일본 총리 최초로 미·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한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금방이라도 TPP가 타결될 것처럼 보도했다. 비록 이후의 일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을 방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앞서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에 대한 안보 공약의 대가로 미국에 협조할 것이 예측되는 등 TPP를 위한 양국 간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물론 아무런 장벽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환율조작 방지 조항 삽입 여부, 신약을 비롯한 자식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대립, 강제노동 문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회의적 시각, 투자자-국가소송제(ICS), 공중보건과 환경문제 등이 주요 장애물로 부상했으나, 협상 주도국인 미·일 간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쌀, 유제품, 설탕, 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서로 한발 물러서면서 TPP 타결이 보다 현실화됐다.

TPP 주춤하는 사이 RCEP도 11월 타결하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노동, 환경기준과 강력한 자식재산권 보호,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관세 축소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CTSD(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창립자 청 슈아이후와 역시 중국의 협상 참가에 대해 말했지만 정작 중국의 속내는 다른데 있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이 TPP에 참여하기로 한 때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로드맵 챕터를 계기로 자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하 FTAAP)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FTAAP보다 현실적인 TPP 대형축은 사실 RCEP이다. FTAAP는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의 그야말로 APEC 회원국 간의 메가 FTA인 반면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TPP가 머뭇거리는 사이 RCEP은 올해 11월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확인됐다. RCEP 참여국들은 11월 정상회의에서 또는 같은 달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 교토에서 열린 8차 협상에서 관세철폐품목 비율인 자율화율에 대해 선진국(80%)과 신흥국(40%) 사이에 이견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여전히 연내타결을 목표로 사태 타개에 힘쓰고 있다. RCEP은 GDP지표에서는 20조 달러로 TPP의 27조 달러에 못 미치지만, 인구지표에선 TPP가 8억 명인 반면 중국과 인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RCEP은 34억 명으로 TPP의 약 4배 이상에 달한다.

TPP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 냉정히 따질 때

한국이 열강들 속 역사적 경험과 그 동안 쌓아온 협상능력을 심문 발휘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의 메가 FTA시대다. 한국은 RCEP과 TPP 둘 사이에서 연미화중(聯美和中), 연미협중(聯美協中)의 외교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RCEP과 TPP는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둘 다 11조 달러 수준으로 비슷하나 이미 2012년 11월 협상개시 시점부터 참여하고 있는 RCEP과는 달리 TPP에는 최근에서야 사실상의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일본이 TPP 참여의사를 밝힌 2013년 한·미 FTA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피로로 TPP 가입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RCEP과 TPP의 동시가입은 중국과 미국 사이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타당하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TPP 가입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역할 공고화, 누적원산지 규정과 글로벌가치사슬의 활용, TPP를 통한 새로운 국제 표준 참여, 일본·멕시코와의 간접적 FTA, 한·일 공동의 해외개발 협력 강화 기회제고 등 얻을 것이 많다.

물론 실(失)도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TPP 협상에서 그려했듯 한국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을 필두로 기존 협상국들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TPP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쌀 관세화를 예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행 513%의 쌀 수입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의무수입량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음 TPP 참여 기회로 미국과 일본이 협상타결을 선언한 직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비록 한국이 TPP 참여 준비가 잘 돼 있으나 지금 추가로 한국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과의 역사문제다. 다만 TPP 참여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와 통상의 투 트랙전략으로 임해야 할 전망이다.❷

❷ TPP, RCEP에 대한 견해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②한·중 지식재산권 이해 I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등록주의… 저작권·영업비밀은 무등록주의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비교되는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무형성(無形性)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해야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속지주의, 등록주의, 선원주의, 심사주의 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큰 틀에서 한·중 지식재산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개별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에 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무형성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 즉, 무형성이다. 그로 인해 유체 재산권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일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점 중 한계생산비용이 '0(제로)'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무형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동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경제학 용어를 빌려 설명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유체물에 관한 소유권과는 다르다. 대개 일

반인들은 무형자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 관계에서 소유권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업적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인지하지 못해 판단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유체물에 직접 대응되는 권리가 아니다. 무형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은 하나가 아닌 수천·수만 가지의 유체물에 체화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은 각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유체물의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지식재산권이 함께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유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유체물에 체화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2. 산업재산권의 속지주의 및 등록주의

속지주의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른다. 여기서 '속지주의(屬地主義)'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대비되는 법 적용 범위로, 해당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리적 위치인 자국 영토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이는 후술할 산업재산권의 등록주의에 따른 각 국가별 권리 발생과 관련이 있다. 결국 한국에서만 산업재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권리 침해를 당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등록주의 '속지주의'와 함께 한국과 중국은 산업재산권의 발생에 관하여 '등록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등록주의'란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특허청에서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국가지식产权국 전리국(国家知识产权局 专利局)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 商标局)에서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한국 내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전리권(한국법 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권리로, 보다 구체적으로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가 있음)은 국가지식产权국 전리국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표권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관련 절차를 밟아야 중국 내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등록주의'로 인해 해당 관청에 관련 절차를 가장 먼저 밟은 사람의 권리만을 보호해 주는 '선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중국인이 동일한 산업재산권을 동일한 날짜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각국 해당 관청에 절차를 먼저 밟은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심사등록주의와 무심사등록주의 '등록주의'를 '심사주의'와 결부시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을 실체적인 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록시켜 주는 '심사등록주의'가 있는 반면에, 실체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경우 바로 등록시켜 주는 '무심사등록주의'가 있다.

한국의 특허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에 관하여 '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해 특허청 심사관이 각 권리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발명 전리권(우리나라의 특허권에 해당)과 상표권은 '심사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용신형 전리권(우리나라의 실용신안권에 해당)과 외관설계전리권(우리나라의 디자인권에 해당)은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심사등록을 하고 있다. 중국의 실용신형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은 실체심사가 없어 빠른 기간 내에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권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

3.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관한 무등록주의

저작권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저작권을 획득하게 된다. 저작권은 권리행사의 면에서 산업재산권과 비교해 큰 이점을 갖는다. 산업재산권은 권리행사에 앞서 별도로 마련된 등록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나, 저작권의 경우 특별한 행정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저작자의 창작행위만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행사가 즉시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기입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은 중국에서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은 다양한 국가에서의 국제적인 보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 한국과 중국 모두 영업비밀의 보호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는 특정 행정절차 없이 보호될 수 있다. 한국은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이와 유사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서 보호하고 있다. ☐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⑭ 캠핑용품

캠핑 인구 빠르게 증가…수입·수출 규모도 급증

우리나라 캠핑인구는 48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캠핑장은 전국에 1800여 개로 추산된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품 시장규모 또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용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품 시장규모 또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캠핑용품은 크게 텐트·타프, 침구매트(슬리핑 기어), 캠핑가구(퍼니처), 주방기구(쿡웨어), 조명기구, 기타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텐트와 타프를 살펴보자. 텐트는 과거 원룸형에서 투룸, 쓰리룸에 거실 개념의 공간 등 아파트 내부구조와 흡사한 제품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오토캠핑용 텐트뿐 아니라 솔로용, 통풍이 잘 되는 스크린텐트 등이 있으므로 캠핑 형태에 맞춰 텐트를 골라 쓸 수 있다. 관세율표상 텐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캠핑용품은 HS6306호에 분류되고 있다. 텐트의 경우 합성섬유로 만든 것은 HS6306.22호에,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은 HS6306.29호에 분류된다.

텐트·타프 외에는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속해

캠핑 좀 다닌다는 사람은 타프를 꼭 챙긴다. 텐트 앞에 햇볕과 비를 막아주는 타프(그늘막)를 설치해 거실 공간을 확보한다. 여름철 캠핑엔 타프가 필수다. 텐트는 밤에 잠자는 공간으로만 이용되지만 온종일 지내는 공간은 타프 그늘이기 때문이다. 텐트는 작더라도 넉넉한 타프를 쳐놓으면 오토캠핑용 텐트가 부럽지 않다. 타프는 원래 타르를 입힌 천을 말하는 방수포(Tarpaulin)에서 따온 이름으로, 모양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타프는 텐트와 달리 캠핑장 상황에 맞게 기본형, 밀폐형, 완전개방형, 비대칭형, 측면개방형 등 자유롭게 모양을 변형하며 칠 수 있다. 타프도 HS6306호에 분류되는데 합성섬유로 만든 것은 HS6306.12호에,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은 HS6306.19호에 분류된다.

퍼니처 라인은 테이블과 의자를 말한다. 오토캠핑 봄이 일면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대형 텐트의 전실이나 타프 아래에 테이블과 의자를 차려 놓으면 요리 공간과 어른들의 술자리, 아이들의 쉼터 구실을 한다. 아파트의 거실 개념으로 보면 된다. 테이블은 인원에 따라 2풀딩, 3풀딩 등으로 나뉘고 용도에 따라 바비큐 테이블도 있다. 이러한 다용도 테이블은 HS9403호의 기타 가구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된다. 의자는 등받이가 길어 머리까지 기댈 수 있는 릴랙스 체어와 허리까지만 올라오는 로 체어로 구분된다. 화로대 앞에서 쓰는 벤치 형태의 의자도 있다. 이러한 캠핑용 의자는 각종 의자가 분류되는 HS9401호에 분류된다.

슬리핑 기어는 침낭과 매트리스 등 잠자리에 필요한 장비다. 침낭은 겨울용과 3계절용으로 구분된다. 형태는 머미형(사람 체형에 맞게 제작된 침낭)과 사각형 침낭으로 구분된다. 침낭은 HS9404.30호에 분류된다. 아무리 좋은 침낭이라도 매트리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매트리스는 밸포 매트와 에어매트로 크게 구별된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밸포매트는 일반적인 매트리스가 분류되는 HS9404호의 침구류에 분류된다. 이에 반해,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에어매트는 압축공기식 매트리스가 분류되는 HS6306.40호에 분류된다.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하는 해먹이 있다. 해먹의 경우 대부분 HS6306호에 분류되나, 그물코가 있는 망으로 만든 것은 HS6508호에 분류되고 있다.

스토브는 가스와 석유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연료를 구하기 쉽고 조작이 간편한 가스버너를 많이 사용한다. 석유버너는 낮은 기온에도 점화가 잘 되고 화력이 좋아 겨울에 주로 사용한다. 가스연료용 스토브는 HS7321.11호에, 액체연료용의 스토브는 HS7321.12호에 분류된다. 본체, 솟받이, 석쇠로 구성되어 있고 솟을 별도로 넣은 후 사용하는 바비큐 그릴은 HS 7321.19호에 분류된다.

캠핑장은 가로등이나 간접 조명이 없는 곳이 많아 랜턴도 필요하다. 랜턴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텐트 전실이나 타프에서는 메인 랜턴과 보조 랜턴, 침실 공간에는 취침용 랜턴, 그리고 밤에 화장실이나 주변을 다닐 때 필요한 헤드랜턴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랜턴(LED 랜턴 포함)은 HS8513.10호에 분류된다.

그밖에 주방기구를 의미하는 쿡 웨어는 코펠과 식기세트를 비롯해

다양한 용품이 있는데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 급증…동시에 중국 내 캠핑 수요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캠핑 인구의 증가로 최근 야외 레저용 캠핑용품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진국의 고가 브랜드의 용품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중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도 최근 몇 년간 생활수준이 제고되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텐트, 침낭, 그릴, 취사 도구 등 캠핑용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캠핑용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캠핑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캠핑용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한류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아웃도어 활동을 주제로 한 쇼 오락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변경사항 알아두기

수출업체 애로사항 적극 수용... 쉽고 안정적인 활용 가능

지난 1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가 간소화됐고,
기존의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업체별 3년, 품목별 2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1.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기존의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크게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로 나뉜다. 기존의 업체별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품목별의 경우 2년이었으나 모두 5년으로 연장됐다. 이로써, 업체별과 품목별의 인증기간이 서로 상이해 기업들이 혼동했던 부분과, 힘들게 인증을 취득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적극 반영됐다.

법령이 개정된 2015년 5월 18일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직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인증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인증을 취득한 관할세관에서는 기존의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에 유효기간이 정정된 인증서를 교부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이전에 인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업들의 업무 안정성을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린 만큼,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인증 취득 후 인증 취득 시점과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관세당국에서 인증 기간 연장이라는 편의를 제공한 만큼, 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 부분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인증요건 유지를 위해 원산지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보정요구 및 반려 시 보정요구서 송부 및 보정기간 연장 가능

인증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은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 이 아니라, 보정기간, 보정요구 이유, 보정할 사항,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 내용이 기재된 보정요구서를 송부해 보정의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한 기간 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반려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함에 따라 관세당국의 행정처리에 따른 이유를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보정기간 연장의 사유 및 필요기간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 당초 보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3. 일괄갱신 허용 및 인증연장 안내서 송부 의무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 또는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증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했다. 이때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끝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한꺼번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인증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인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업들은 일괄 신청을 통해 인증 유효기간의 일괄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갱신 기간을 놓쳐 신규로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보내도록 해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4. 인증신청 세관 선택가능 및 인증신청 업무 관세사 대행 가능

그동안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세관에서든 자유롭게 선택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증신청 업무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전문성의 결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 또는 인증 컨설팅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업체도 많다. 이전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업체의 전담자의 이름으로 신청이 들어감에 따라 관할세관의 보정요구가 신청업체 측으로 전달됐다. 따라서, 실제 신청업무를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보정요구를 다시 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시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관세사가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기업이 직접 세관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준 관할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증기간 연장 등의 주요 개정사항을 인증취득 업체로 통지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증기간 연장에 따른 새로운 인증서를 교부 중에 있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인증수출자 인증기간 연장됨에 따라 인증수출자 취득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규 인증 신청기업 및 기존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대로 숙지해 FTA 활용에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변경사항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아직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인증기간이 5년으로 연장



보정요구 및 반려 시 보정요구서 송부 및 보정기간 연장 가능

관할 세관이 보정 요구 또는 반려 시 보정기간, 보정요구 이유, 보정할 사항,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 내용이 기재된 보정요구서를 송부



일괄갱신 허용 및 인증연장 안내서 송부 의무화

품목별 또는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증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 허용



인증신청 세관 선택가능 및 인증신청 업무 관세사 대행 가능

관할 세관 아닌 모든 세관에서 신청 가능해지며, 기존의 해당업체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던 것을 거래 관세사도 가능하도록 확대

사후검증 성공 노하우

원산지소명자료의 데이터 불일치에 주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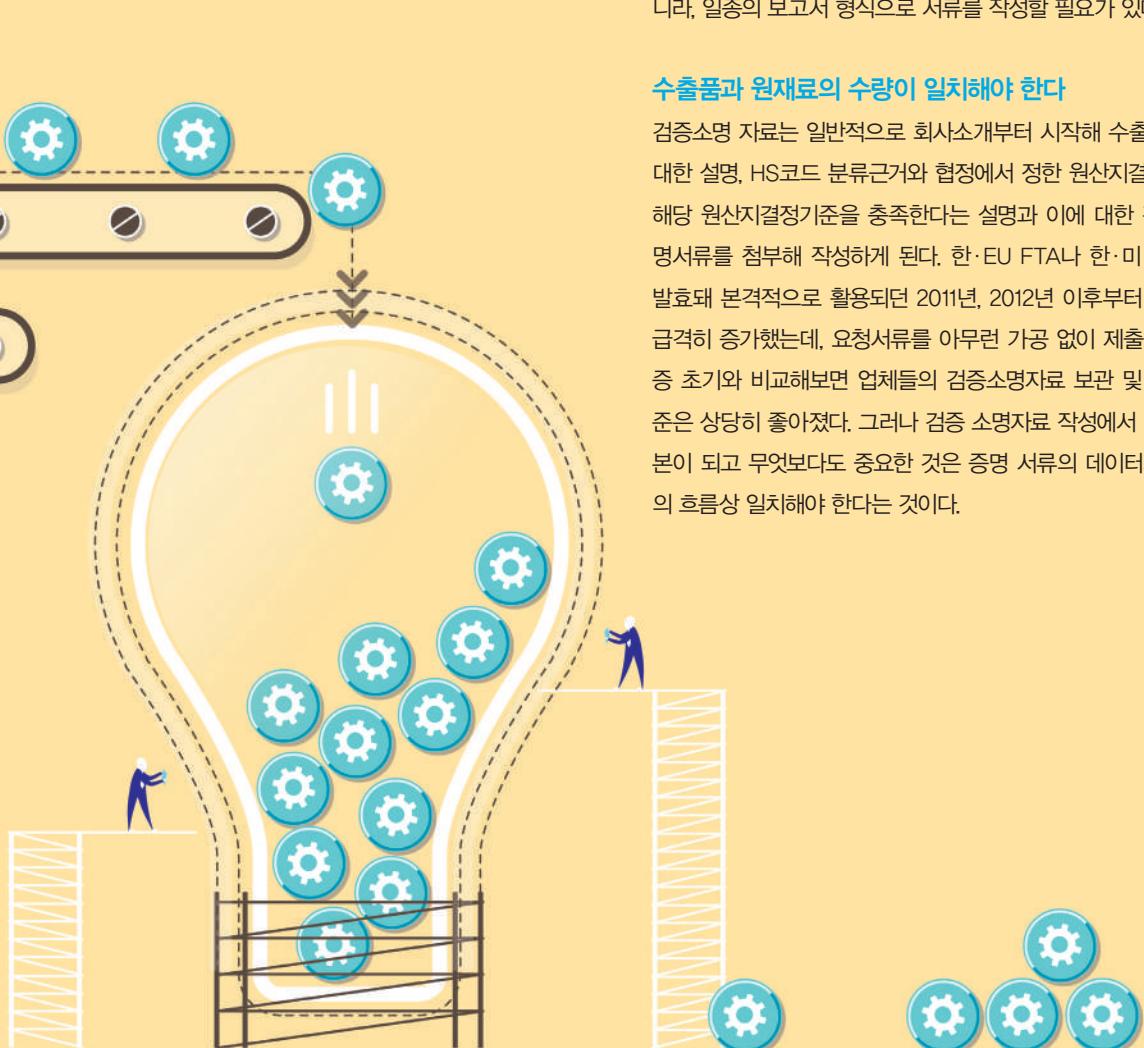
FTA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인 물품설명자료, 소요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Flow Chart), 원재료 구매내역, 물품을 제조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등) 등을 검증 기관에 제출해 수출 또는 제조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해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물품을 생산해 수출한 내용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한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해 아무런 정 보가 없는 검증요원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검증소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나열하거나 서류만 첨부해 검증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수출품과 원재료의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검증소명 자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소개부터 시작해 수출품목에 대한 설명, HS코드 분류근거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과 이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해 작성하게 된다. 한·EU FTA나 한·미 FTA가 발효돼 본격적으로 활용되던 2011년, 2012년 이후부터 검증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요청서류를 아무런 가공 없이 제출했던 검증 초기와 비교해보면 업체들의 검증소명자료 보관 및 작성수준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검증 소명자료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명 서류의 데이터가 논리의 흐름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품이 역내에서 제조됐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고 일련의 제조공정을 거쳐 최종 수출품이 완성됐음을 서류로써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A, B, C가 있고, 각각 1,0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000개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선 A, B, C 원재료가 총 3,000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매했다는 증명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하며, 구매한 원재료를 언제 몇 개의 수량을 투입해 제조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작업지시서, 일일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가 필요하게 된다.

하루에 100개의 완성품이 생산된다면 매일 작업에 투여되는 원재료 A, B, C의 수량도 각 100개가 될 것이며, 총 10일에 걸쳐 제조 될 것이다. 따라서 완제품을 6월 말에 수출한다면 적어도 6월 초에 원재료 A, B, C를 각 1,000개 이상 구매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작업을 했다는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를 구비해 수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각각의 서류상의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제조 단계에 맞추어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야드, 개 등 단위 표기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

수출자 A는 미국에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평

소 FTA 원산지관리도 잘 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한·미 FTA 사후검증에 여러 번 성공한 경험도 있어 자료 작성 수준도 높은 편이다. 최근 수출했던 물품 중 일부에 대해 미국 CBP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고 평소대로 준비해 대응했다. 당연히 잘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원산지결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충족 통보를 받았다.

불충족 사유는 증명자료가 불완전(incomplete)하고 비논리적(illogical)이라는 것이었다. CBP에 보냈던 자료를 재검토했으나 불완전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CBP의 담당 검증요원에게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원재료의 수량과 완성품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Specifically, the records provided were incomplete for the A(품목명), illogical for the B(품목명)...

– CBP Form 29에 기재된 불충족 사유 중 일부 발췌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총 2,400개(unit)의 물품을 수출했는데 거래명세서 상 원재료의 수량은 1,000으로 단위가 생략된 채 기재돼 있었다. 완성품의 단위는 개수(unit)로 표기돼 있고, 원재료는 직물이기 때문에 야드(Yard)로 표기돼야 하나 거래명세서에는 단위가 생략돼 있었다. 또한 다른 어떠한 서류에도 해당 원재료의 단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검증요원은 자료가 불완전하며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원재료 수량으로는 수출품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원재료는 비역내산이 사용됐다고 판단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검증소명자료 작성 시 구매한 원재료 1,000야드(Yard)를 이용해 몇 개의 완성품이 생산 가능하고 그 중 2,400개를 수출한 것이며, 원재료 거래명세서상에 야드 단위가 누락됐다는 설명만 있었어도 검증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검증소명자료 작성 시 작성자가 가장 주의할 점은 검증요원인 제3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작성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돼 아무런 설명이 없는 부분들이 있진 않은지, 회사의 시스템과 제조공정 등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됐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원산지소명자료 작성 시 필요한 자료들

①원재료 구매를 입증

원재료 A 1,000unit
원재료 B 1,000unit
원재료 C 1,000unit

원재료를 구매했다는
→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가 필요

②역내 제조 사실을 입증

2015년 6월 1일 원재료 A, B, C 각 1,000unit 구매
2015년 6월 2일 원재료 입고
2015년 6월 3~13일 완제품 1,000unit 완성(100unit/day)
2015년 6월 20일 완제품 검수 및 출하
2015년 6월 25일 1,000unit 수출신고, 물품 선적

원재료를 언제 몇 개의
수량을 투입해
제조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작업지시서,
일일생산량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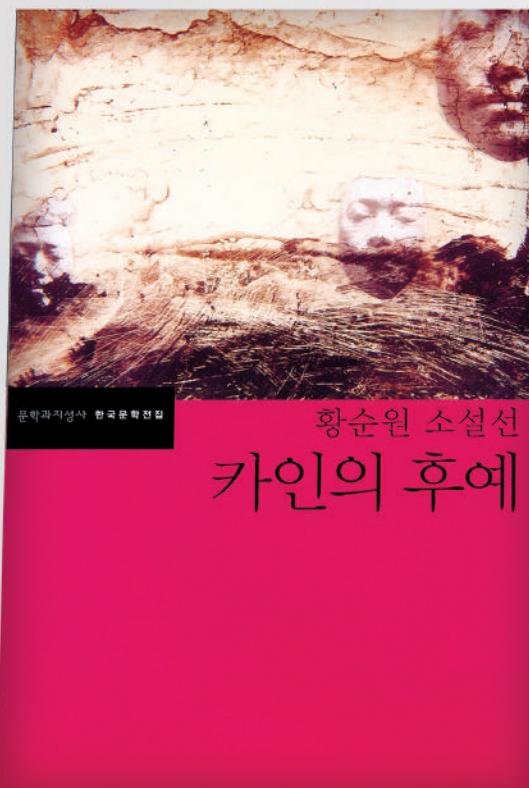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⑨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우리 모두는 '카인의 후예'인가



“사람이란 맷(몇) 번 변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데 둘(둘)은 사람 나쁜(쁘)게 되긴 쉬워두 나쁜든 사람
돌게 되기야 쉽든가.”

황순원의 소설 '카인의 후예(1954)'에 나오는 이 문장들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인간성을 드러낸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 이 소설은 1946년 3월 북한에서 일어난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역사적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인간들과 그 도덕적 타락을 다루고 있다. 토지개혁은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사회적 계급, 즉 지주와 소작인을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

'카인의 후예'는 국가권력에 의해 잠재적 죄인으로 지목된 박훈과 그와 관계를 끊기 위해 노력하는 도섭 영감의 갈등이 핵심 내용이다. 박훈네 마름이었던 도섭 영감은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놓인 중간적 존재인 마름으로 토지개혁 이전에는 지주의 편에, 토지개혁을 전후해서는 농민의 위치에 선다. 지주의 소작농 착취를 일선에서 대리 수행한 마름이었다는 그의 과거 전력은 농민들의 나라가 된 북조선의 현실에서 엄청난 원죄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십여 년 동안이나 훈네 마름으로 있은 게 이제 와서 꿀리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자신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 밖에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

선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역사적 현실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박훈 할아버지의 송덕비를 부순 사건이다. 도섭 영감은 모두 다 죽이고 싶다고 외치면서 도끼로 송덕비를 부순다. 도섭 영감이 진짜 부수고자 했던 것은 송덕비가 아니라 바로 지주의 편에 서서 소작농을 착취하는데 앞장섰던 그의 과거였을 것이다. 심지어 아들이 용제영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로 면 농민위원회에서 물러나자 아들에게 살의를 드러낸다.

'이놈의 새끼, 집에 들어와만 봐라. 들어와만 봐! 더 팔에 힘을 주어 낫을 갈았다. (중략) 도섭 영감은 아들이고 누구고 비위에 거슬리는 놈은 모조리 낫으로 찔려버리고 만 싶었다.'

도섭 영감의 이런 도덕적 타락과 변화는 그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다. 도섭 영감은 용기와 희생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 한번은 홍수가 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물에 떠내려가는 박혁(박훈의 사촌)을 구해내기도 했다. 도섭 영감은 농민들에게 기해자이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다. 즉 도섭 영감과 낫을 들고 지주를 숙청하는데 앞장서는 마을 농민들의 변화는 바로 외적 현실의 변화 때문이다. 이들을 카인의 후예들로 만들어가 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둘러싼 역사 바로 그것이다.

도섭 영감의 아들, 딸인 삼득이와 오작녀는 시대의 변화에도 타락하지 않는 인물을 상징한다. 박훈은 도섭 영감의 아들인 삼득이가 토지개혁을 전후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나 훈의 미행은 세상의 타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도섭 영감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훈을 구해주는 인물도 바로 삼득이다.

삼득이가 남성적인 의리를 실천하는 인물이라면 그의 누이인 오작녀는 여성적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오작녀는 어려서부터 박훈을 연모해왔지만 그가 평양으로 이사한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훈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한 오작녀는 남편에게 쫓겨난다. 그녀는 부부사이에도 '젖가슴'만은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훈을 뜻바라지하게 된다. 토지개혁의 와중에서는 훈의 재산을 뺏고 숙청하려 온 사람들로부터 훈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오작녀는 숙청당할 위기에 처한 박훈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와 연을 끊고 동네 사람과 남편 앞에서 박훈과 부부가 되었다고 폭탄선언을 해 버렸다. 이로 인해 박훈은 위기에서 벗어난다. 인민일보에서는 지주와 마름의 딸이 계급의 고리를 끊고 결혼했다고 보도한다.

남편에게 젖가슴을 보여주지 않던 오작녀는 발진푸스가 걸려 열에 들뜬 어느 날, 박훈에게 젖가슴을 보여준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어서 좀 이놈의 가슴을

빼개달라우요……."

열에 들뜬 상태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젖가슴을 훈에게 내보인 것이다. 오작녀가 "이 가슴을 좀 빼개주소"라고 호소하는 것은 바로 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출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젖가슴의 이미지는 모성과 영원성을 상징한다.

소설을 읽으면 '오작녀의 눈'이 떠올라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오작녀의 사랑은 카인의 후예에서 모든 도덕적 행동의 모델이 된다. 칼 용에 의하면 눈[目]의 상징적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징한다. 이 작품 속에서 눈의 이미지는 헌신과 희생을 표상하는 '어머니의 가슴' 즉 모성적 사랑을 상징한다. 잔디에 불이 나 모두들 도망가 버리지만 오작녀는 자신의 몸을 굴려 잔디불을 끈다. 그때 훈은 처음으로 오작녀의 '타는 눈'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찾던 그 눈이다. 이 눈을 찾아 여태 해맨 것이다! 그리 달려가 오작녀의 가슴을 안았다. 오작녀,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오. 당신의 그 건강한 핏속에 내 씨를 뿌리고 싶소. 거기에 내 옹졸한 피를 씻고 싶소.'

오작녀의 남편이 해방군인(소련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안 박훈은 이런 꿈을 꾼다. 박훈의 꿈을 통해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설의 결말에서 박훈은 오작녀와 함께 월남하는 것을 암시하며 끝난다.

그런데 박훈은 오작녀의 눈 때문에 다른 여자는 성에 차지도 않았다. 한번은 선을 본 여자와 약혼까지 할 뻔 했는데,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여자였는데 그저 어쩐지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은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이상스레 떠오르는 건 이 오작녀의 눈이었다. 어느 여자이고 이 오작녀의 눈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오작녀의 눈을 자꾸 떠올려 보게 된다. 아들에게 살육까지 품는 도섭 영감이 카인의 심성을 가진 인간으로 그려지는 반면, 모성을 상징하는 오작녀의 가슴은 에덴과 같은 원시적 자연의 품이라고 할 수 있다. ●



황순원(1915~2000)

교서에 실린 단편소설 '소나기'로 잘 알려져 있다. 평안남도 대동(代同) 출생. 1931년 시 '나의 꿈'을 '동광'에 발표하며 등단했다.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양한 기법적 장치들, 치열한 휴머니즘 정신, 한국 전통의 삶에 대한 애정 등을 고루 갖춘 그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일제강점기로부터 근대화 시기에 대한 적절한 조명을 통해 서정성과 역사성의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 이현주 기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FTANEWS

제11차 'TPP 전략포럼' 개최

미 의회의 TPA 처리 가속화에 따른 TPP 대응전략 모색



최근 TPP 타결의 전제로 부각된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이 지난 6월 18일 하원 통과에 이어, 24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내 법안 처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제 11차 'TPP 전략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TPA 동향 및 TPP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TPP 전략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PP 전략포럼은 산·학·연의 TPP 전문가(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로 구성, TPP 대응전략과 참여 시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족했다. 그간 10회에 걸쳐 경제·산업·통상·정치외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 TPP의 실제 타결 시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에 산·학·연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TPP가 현실화되면 아태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향후 이 지역의 경제·통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포럼 의장인 안덕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방형 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거대 경제권 간에 이뤄지고 있는 메가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현재 TPP 타결 가능성에 높아짐에 따라 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TPA/TPP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왔으며, 향후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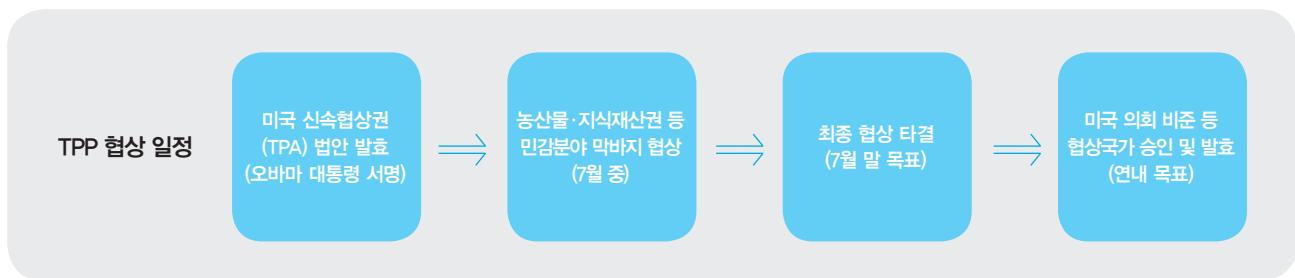
하반기에는 TPP 관련 협상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PP 전략포럼에서는 상반기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TPP 협정문 공개 시, 협정문의 각 분야별로 국내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11차 TPP 전략포럼 참석 전문가 명단

구분	성명	소속
포럼전문가	안덕근 김영모 박천일 서정민 송영관 임정빈 정철 허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장) ER행정컨설팅 대표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송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KDI 연구위원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KIEP 아시아태평양실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초청전문가	안세영 채우 최세균 조철 서진교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KIEP 원장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KIEP 무역통상실장
학계	이한영 조희경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홍익대 법대 교수

미국 상원, TPA 통과

TPP 협상 급물살…미·일 간 이견 해소가 ‘막판 변수’



미 상원은 6월 2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TPA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처리했다. 6월 18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명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7월 중 TPP 협상을 타결하고 연내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도 이날 TPP 참가 12개국 장관급 협상에 대해 “각 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7월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양자회담을 재개한다. 일본의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 관세와 관련해선 기본 합의에 성공했지만 쌀과 자동차 부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쌀 수입 급증 시 수입 제한조치 발동 조건 등에서 미·일 간 이견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전체 12개국 사이에는 지식재산권이 여전히 협상의 난관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의약품 특허에 대해 10년 이상의 특허 기간을 주장하는 반면 호주 등은 5년 등 단기를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제품 관세 철폐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미·일이 협상 타결에 적극적이어서 일본 내에서는 7월 장관급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

발효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수전 슈워브는 “농산물, 자동차, 지식재산권 등 민감한 항목이 많다”며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TPP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 강경파,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TPA: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불리며, 국제교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한 무역협상 권한이다. 의회에는 이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가결’과 ‘부결’ 권리만 부여되고, 협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상권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갖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권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합의한 뒤에도 여론에 민감한 미국 의회가 협상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국제협상에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어진다. 즉 미국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무역협상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정부에 위임해 다른 나라와 통상교섭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독특한 제도다.



Information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관세청장

○ 목적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6조의 3 제 4항

○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 발급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서류명

서류명	내용	서식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수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 자세한 품목 및 서식은 'FTA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okita.kita.net)→FTA소식→공지사항→(관세청)세관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등록일 2015년 6년 1일)' 참고

○ 시행일자: 2015년 6월 4일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FTA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FTA라는 것이 체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수적인, 그러나 꼼꼼한 행정조치가 수반되는 것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성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일목요연한 자료로 상대국 세관의 의구심을 해소하라'를 읽고 FTA 활용 기업이 증가하면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을 실감 나게 느꼈습니다.

김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커버스토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활용 세미나'를 보고 아시아의 용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급성장한 중국을 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알보던 옛날 중국이 아님을 새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처음 듣는 용어라서 어떤 의미인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송지영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처음에는 FTA의 모든 것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책을 보게 되었는데, 매호 읽을 때마다 새로운 소식이나 FTA의 진

정한 의미, 직간접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하며 요즘은 아예 FTA 홍보위원처럼 변했습니다.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FTA를 통해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것 같아 유심히 읽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한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랍니다.

김지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중 FTA, 14억 중국이 더 크게 열립니다



14억 중국이
더 크게
열립니다



- 연간 78억불의 수출 관세 즉시 철폐
- 458억불의 수출 관세는 10년내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로
비즈니스가
더 쉬워집니다



-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의무 면제
-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히 관세 사후 신청

서비스 시장이
더 크게
개방됩니다



- 건설사 등급 판정 시 한국 실적 인정
- 엔터테인먼트기업의 합자회사 허용
- 5개분야 환경시장에서 100% 지분설립 허용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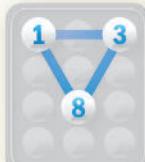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제공해